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무역항의 출입 신고 제외 대상에 어선 추가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1669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무역항의 출입 신고 제외 대상에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출입항 신고 대상 어선을 추가	2

I. 제출경위

1. 제 출 자 : 정 부
2. 제 출 일 : 2024. 7. 12.
3. 회 부 일 : 2024. 7.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역항의 수상구역 내에 있는 항구나 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등 신고기관에 의무적으로 출입항 신고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출입항 신고 대상 어선은 이 법에 따른 무역항 수상구역 등에서의 출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무역항의 출입 신고 제외 대상에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출입항 신고 대상 어선을 추가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무역항의 출입 신고 제외 대상에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출입항 신고 대상이 되는 어선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출입 신고) ① 무역항의 수상 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이하 이 조에서 “선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선박은 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출입 신고) ①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4.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 대상이 되는 <u>어선</u>
4. (생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¹⁾에 출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과 해양사고구조에 사용되는 선박 등은 출입 신고에서 제외됨.

그런데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어선안전조업법」의 제정(2020.8.28. 시행)에 따라 ‘어선’의 출입항 신고는 해당 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무역항의 수상구역 내에 있는 항구나 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은 현재 「어선안전조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등 신고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고 있음²⁾.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항”이란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항만을 말한다.

2)2. “관리청”이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

가.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해양수산부장관

나.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제4조(출입 신고)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이하 이 조에서 “선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선박은 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어선안전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신고기관”이란 어선의 출입항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출장소 및 해양경찰서장이 민간인으로 하여금 출입항 신고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대행신고소를 말한다.

제8조(출입항 신고) ① 항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 사용지정을 받은 어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어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에 출어하는 경우에만 신고한다. 1. ~ 3.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입항하는 어선은 제1항에 따른 출입항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선박입출항법」 및 「어선안전조업법」 상 신고현황]

구분	출입신고대상	출입신고제외	관리청(신고기관)
「선박 입출항법」	무역항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	·5톤미만선박 ·해양사고구조에 사용되는 선박 ·수상레저기구 중 국내항 운항 모터보트 등	국가관리무역항:해수부장관
			지방관리무역항:시·도지사
「어선안전 조업법」	항포구 ³⁾ 에 출입항하려는 어선 소유자 또는 선장	·관리선 사용지정 또는 사용승인 받은 어선이 특정해역·조업자제해역 등 출어시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출장소
			대행신고소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출입신고 제외대상에 어선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내항어선이 무역항의 항·포구에 출입하는 경우 「선박입출항법」 제4조에 따른 관리청과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신고기관에 각각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 대상이 되는 어선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법 적용간의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또한, 실제적용에 있어서 현행법에 따른 무역항 출입신고를 하는 선박은 무역항의 항만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출입신

③ 제1항에 따른 출입항 신고를 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신고인 인적사항, 승선원 명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어선출입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출입항 신고의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어선안전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항포구”란 어선이 조업 또는 항행 등을 위하여 출항 또는 입항(이하 “출입항”이라 한다)하는 항구 또는 포구를 말한다.

고를 하는 것이므로, 동 항만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내항어선은
출입신고의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임.

- 참고로, 해양수산부는 「항만법」에 따른 무역항은 주로 수출입을
위해 외항선(컨테이너선 등)이 출입하는 항만으로 실제로 어선이
무역항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 출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⁴⁾, 지방
관리무역항의 경우에도 내항어선은 해경 등에 신고를 하고 있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 대응 1차 기관인 해경의 신속한 대응
이 가능하다는 설명임.

문 의 처
02)6788-5419

4) 태풍 등 악천후 시 피항을 위해 입항하는 매우 드문 사례가 있음